

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742호 2026. 5. 18. (월)

공 고

○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2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홍보과 ☎ 061-270-8539

입 법 예 고

「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. 5. 18.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5조의2(회계감사인의 선임 등) 개정(2026.1.1. 시행)에 따라,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구성·운영 하여야 하며, 그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의무 화됨. 이에 따라 본 규칙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·운 영 절차 등을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설치(안 제115조)
- 위원회의 구성(안 제116조)
- 위원회 임기와 직무(안 제117조)
- 위원회의 운영(안 제118조)
- 위원의 제척 등(안 제119조)
-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계약체결(안 제120조)

3. 개정규칙안 : 붙임

4. 관련법령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5조의2(회계감사인의 선임 등)
- 「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」 제7조(감사인의 선정)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의3(회계감사인의 선임 등)

5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분석평가(감사실)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평가(여성가족과)
: 개정안 제116조와 관련하여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선의
견이 제시되어 반영함.
- 규제심사(기획예산과) : 해당없음

6. 입법예고기간 : 2026. 5. 18. ~ 2026. 6. 8. [21일간]

7. 사전협의(승인) 사항 : 해당없음

8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8일까지 목포시장(수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나. 제출방법 : 우편, FAX(061-270-8301), 직접 방문

다. 의견제출처 : (58724)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, 트윈스타 5층(수도과)

9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수도과(☎ 061-270-352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별첨1]

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 경영분석 및 결산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제1절 경영분석

제114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절 결산

제6장에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절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

제115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목포시 지방공기업의 상수도사업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1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수도사업 담당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1. 수도과장

2. 하수과장

3. 상하수도사업 혹은 회계업무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

4. 시민단체 및 상하수도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지방공기업 수

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회계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117조(위원회 임기와 직무)

-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③ 위원이 「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한다.
-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- 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9조(위원의 제척 등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해당 업체의 용역·자문·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
 2.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
 3.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 -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 -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제120조(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계약체결) ① 회계감사인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임한다.

②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하여 회계감사를 수행하려는 회계법인 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으로부터 제안서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별표 1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선임대상자를 선정하고, 이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은 회계감사인으로 선임 될 수 없다.

1. 회계법인인 경우: 「공인회계사법」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계법인

2. 감사반인 경우: 그 감사반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감사반

⑤ 회계감사인은 선임 당시뿐만 아니라 감사 수행 중에도 제4항에 따른 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자격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한다.

제7장 채권관리 제115조(채권의 관리책임)부터 제120조(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)까지를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로 한다.

제8장 보칙 제121조(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)부터 제122조(회계서류의 보관 등)까지를 제127조부터 제128조까지로 한다.

[별표1]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15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(제120조 제3항 관련)

구분	평가항목 및 평가내용	배점	평점					비고
			A	B	C	D	E	
감사 수행 능력 (35)	① 업 력 -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	5	15년 이상 (5)	10년 이상 (4)	5년 이상 (3)	3년 이상 (2)	3년 미만 (1)	
	② 공인회계사 수 - 선정 해당연도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(수습 공인회계사 제외)	5	20명 이상 (5)	15명 이상 (4)	10명 이상 (3)	5명 이상 (2)	5명 미만 (1)	
	③ 징계현황 - 최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(법인기준)	5	0건 이하 (5)	3건 미만 (4)	6건 미만 (3)	10건 미만 (2)	10건 이상 (1)	
	④ 주요 사업실적 - 최근 2년간 공공기관 감사실적	20	10건 이상 (20)	8건 이상 (18)	6건 이상 (16)	4건 이상 (14)	4건 미만 (12)	
감사 수행 계획 (65)	⑤ 투입인원 - 감사일정 중 투입인원 수, 구성원 등에 대한 상대평가	15	매우 적절 (15)	적절 (13)	보통 (11)	미흡 (9)	매우 미흡 (7)	
	⑥ 투입시간 (1인당) - 감사일정 중 투입시간, 집중도에 대한 상대평가	15	매우 적절 (15)	적절 (13)	보통 (11)	미흡 (9)	매우 미흡 (7)	
	⑦ 인력의 전문성 - 감사일정 중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및 경험, 자질 등을 상대평가	20	매우 적절 (20)	적절 (18)	보통 (16)	미흡 (14)	매우 미흡 (12)	
	⑧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- 회계관련 자문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- 재무적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권고 등	15	매우 적절 (15)	적절 (13)	보통 (11)	미흡 (9)	매우 미흡 (7)	
합 계		100		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장 경영분석 및 결산 <신 설> 제111조(경영분석)----- 제112조(경제성 분석)----- 제113조(경영분석 보고서)----- <신 설> 제114조(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) ----- <신 설>	제6장 경영분석 및 결산 제1절 경영분석 제111조(경영분석)----- 제112조(경제성 분석)----- 제113조(경영분석 보고서)----- 제2절 결산 제114조(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) ----- 제3절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제115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목포시 지방공기업의 상수도사업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목포시 지방공 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감사인 선 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 에 대하여는 「목포시 각종 위원 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 용한다. 제11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수도사업 담당 국장 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 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1. 수도과장
2. 하수과장
3. 상하수도사업 혹은 회계업무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
4. 시민단체 및 상하수도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회계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117조(위원회 임기와 직무)

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이 「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한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

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9조(위원의 제척 등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해당 업체의 용역·자문·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
2.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
3.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

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제120조(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계약 체결) ① 회계감사인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임한다.

②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하여 회계감사를 수행하려는 회계법인 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으로부터 제안서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별표 1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선임대상자를 선정하고, 이를 시장에 추천하여야 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은 회

계감사인으로 선임 될 수 없다.

1. 회계법인인 경우: 「공인회계사법」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계법인

2. 감사반인 경우: 그 감사반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감사반

⑤ 회계감사인은 선임 당시뿐만 아니라 감사 수행 중에도 제4항에 따른 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자격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한다.

제7장 채권관리

제115조 (채권의 관리책임)-----

제116조 (채권의 관리)-----

제7장 채권관리

제121조 (채권의 관리책임)-----

제122조 (채권의 관리)-----

제117조 (대손충당금의 설정)-----

제118조 (채권의 독촉)-----

제119조 (채권의 관리상황기록)---

제120조 (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)

제8장 보칙

제121조 (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)

제122조 (회계서류의 보관 등)

제123조 (대손충당금의 설정)-----

제124조 (채권의 독촉)-----

제125조 (채권의 관리상황기록)---

제126조 (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)

제8장 보칙

제127조 (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)

제128조 (회계서류의 보관 등)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□ 규 칙 명 : 「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」 일부 개정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